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7. 18.

의안 번호 153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7. 5. 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19.7.1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가.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및 범위의 정의,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조례의 목적을 사회적경제의 변화에 맞게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및 조직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7조)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안 제9조)
-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6조)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화·서비스 등의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입법예고(2019. 5. 31.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분석평가서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등의 형태로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음.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 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 등장했음.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해법을 마련하고자시도되었음.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8.13.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한편, 서울시 및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치단체	조례명	공포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9. 5. 16.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4.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4. 5.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1. 8.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4. 18.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8. 10. 26.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8. 12. 27.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8. 8. 13.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8. 12. 27.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1. 16.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6.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9. 3. 28.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018. 7. 4.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9. 20.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8. 12. 27.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 1.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0. 19.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3. 2.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2018. 11. 29.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6. 17.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3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당 조직에 세부적인 설명과 제4호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항에서는 자문기관인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를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

하다고 보여짐.

- 안 제9조(위원의 해촉)의 규정에서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다른 조례의 사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1조(혁신센터의 설치·운영)제3항제5호 중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혁신센터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에서는 조문의 구성을 예시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제1항 규정에서는 혁신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 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규정에 대한 근거가 없는 바 운영규정에 대한 조문을 예시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위탁의 해제, 해지 등)규정은 예시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조문 구성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7조(경영지원 등)제3항 중 '지원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8조(시설비 등의 지원)제1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료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규정으로 판단됨. 제3항에서는 불용물품을 사회적기업에게 양여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78조에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재정지원)제2항 중 '지원금' 보다는 '보조금'이라는 법적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20조(우선구매의 지원)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6조(시행규칙)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부칙 규정에서는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일부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 해 보이며,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명칭이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이를 변 경하였으면 하는데 제출부서의 의견은?
- 조례안의 일부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은 검토보고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센터 명칭은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 시간에 여러 의견을 수 렴하여 변경이 타당하다면 변경하도록 하겠음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 153호

제안일자 : 2019.7.18.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O 입법체계에 맞게 조항의 구성 및 자구를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 O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
- 장의 제명 변경(안 제3장)
-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명칭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로 변경(안 제11조, 12조, 14조)
- O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3조)
- 운영규정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14조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3호 중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로 한다.
- 안 제9조에 제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3장의 제목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강남구사회적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 를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이하 "육성·지원센터"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센터"를 각각 "육성·지원센터"로 한다.
- 안 제12조의 제목 "(혁신센터의 위탁운영)"을 "(육성·지원센터의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혁신센터"를 각각 "육성·지원센터"로 한다.
-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탁기간 및 계약)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 관리책임

- 등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안 제14조제1항 중 "혁신센터를"을 "육성·지원센터를"로, "혁신센터의"를 "육성·지원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탁기관은 육성·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를 "구청장은 은"으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경우"로, "혁신센터 운영"을 "육성·지원센터의"로 한다.
- 안 제17조제3항 중 "지원업무를 위탁하는"을 "위탁하는"으로 한다.
- 안 제19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이 지원금을"을 "사회적기업이 보조금을"로, "경우에는 지원금의"를 "경우에는 보조금의"로, "교부된 지원금을"을 "교부된 보조금을"로 한다.
- 안 제20조 중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 안 제26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육성·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1조제2항 관련)

명칭	위 치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15)

신 · 구조문대비표

워 아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 2. (생략)
- 3. <u>사회적경제혁신센터</u> 운영에 관한 사항
- 4. (생략)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장 <u>사회적경제혁신센터</u>

제11조(혁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 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강남구</u>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 정 안

ተ % ሂ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	
<u>_</u>)	
1. • 2. (원안과 같음)	
3. <u>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u>	
4. (원안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	
1. ~ 3. (원안과 같음)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u>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u>	
제11조(혁신센터의 설치・운영) ①	
<u>강</u> 남구사회적경제육	
성·지원센터(이하 "육성·지원센터	
"라 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u>혁신센터</u>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③ <u>혁신센터</u>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 6. (생략)
- 제12조(혁신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 장은 <u>혁신센터</u>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 적으로 하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u>혁신센터</u>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 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 년 이내로 한다.
-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 은 <u>혁신센터를</u> 운영함에 있어 조례 에서 정한 사항과 <u>혁신센터의</u>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u>육성·지원센터</u>
	③ <u>육성·지원센터</u>
_11	1. ~ 6. (원안과 같음)
제	12조(육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u>육성·지원센터</u>
	 ② (원안과 같음)
	③ <u>육성·지원센터</u>
	<u> </u>
	·
제	13조(위탁기간 및 계약)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 관리책
	임 등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	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u>육성ㆍ지원센터를</u>
	<u>육성·지원센터의</u>

②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15조(위탁의 해제, 해지 등) <u>구청장</u> 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신센터 운영</u>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7조(경영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u>지원업무</u>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u>지원금을</u> 사업계획 외의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u>지원금의</u>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이미 교부된 <u>지원금을</u>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의 지원) 구청장은 <u>사</u>	제20조(우선구매의 지원) <u>사</u>
<u>회적경제조직</u> 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	회적경제기업
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판매촉	
진 및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제26조(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u>정할 수 있</u>	<u>정한다</u> .
<u>다</u> .	

신・구별표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강남구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명칭과</u> <u>위치</u> (제11조제2항 관련)	육성·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1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명칭 위치
강남구사회적경제서울특별시 강남구호남구사회적경제도산대로 128 3층혁신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논현동 4-15)	강남구사회적경제서울특별시 강남구장남구사회적경제도산대로 128 3층육성·지원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153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 7. 5.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일자리정책과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및 범위의 정의, 사회적경제 혁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등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나. 조례의 목적을 사회적경제의 변화에 맞게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및 조직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다.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제9조)

- 마.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제16조)
- 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서비스 등의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5. 31. ~ 2019.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 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각 분야 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 2. "사회적경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 등을 위하여 호혜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가. 사회 양극화 해소

- 나. 지역공동체 재생
- 다.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라. 사회 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
-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방향
 - 2.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조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4.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5.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

-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강남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2.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적경 제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뉴디자인국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1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회적경제혁신센터

- 제11조(혁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사회적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③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4.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혁신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혁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혁신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5조(위탁의 해제,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 신센터 운영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 2. 수탁기관이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4.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제17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료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다.
- 제1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20조(우선구매의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홍보·판매관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동 홍보·판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이하 "홍보·판매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판매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과 같다.
 - ③ 구청장은 홍보·판매관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홍보·판매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2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 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역 내 민간기업 · 단체간 교류 · 협력 ·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2.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창업 및 사회적기업과의 결연 지원
- 제24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25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1. 자립 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 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경제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별표 1] <u>강남구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명칭과 위치</u>(제11조제2항 관련)

명칭	위 치
강남구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15)

[별표 2] <u>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의 명칭과 위치(제22조제2항 관련)</u>

명칭	위 치
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21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례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님
-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라 추가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및 범위의 정의와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4.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행정9급 손 욱(☎ 02-3423-5592)